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벌칙 규정의 전제로서 폐기물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폐기물의 개념을 둘러싸고 상반된 듯한 판결을 하고 있어 앞으로 실무에 있어 혼선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조 현 권

필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2)
사법시험합격(제25회)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변호사 개업('86.5 - '96.1)
환경부 법무담당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부이사관)
현재 : 변호사

I.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999. 1. 4.부터 1999. 3. 1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돈피작업장에서 언양, 김해, 진해 등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600장의 돈피를 수거하여 가공하면서 나오는 사업장 동물성 잔재 폐기물인 돈지(돼지기름 등) 1,500kg(일일 평균)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는 피고인이 일차 가공하여 납품할 돈과를 만들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피고인은 이를 kg당 70원 내지 110원씩, 하루 전체 평균 발생량인 1,500kg 기준으로 105,000원 내지 165,000원씩에 돈지 및 우지수집업을 운영하는 ○○○에게 넘기면 ○○○은 이를 다시 울산유지공업사에 kg당 110원 내지 140원씩에 공급하고 있고, 울산유지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사료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유통경로와 상태를 벗어나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돈지라야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제24조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II. 대법원 2001.12. 24 선고 2001도 4506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소사실=1심판결=원심판결의 요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협동조합(이하 '위조합'이라 한다) 김해공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없이 돼지가죽을 재생처리,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납품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동업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 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게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위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위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돼지가죽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용하는 자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관적인 성상이 같다 해도 사람에 따라서 폐기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재사용(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의 전제로서 폐기물을 들고 있고, 재활용도 폐기물 처리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재활용하기 위한 물건도 폐기물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앞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폐기물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성상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III. 법 흐름

위 2개의 판례를 보면, 돼지가죽이나 돼지기름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하급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의견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앞의 판결을 보면 검찰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하급심 판결이 무죄를 인정하고, 다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의 사례는 검찰과 하급심 판결이 모두 유죄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이 이들을 모두 뒤집어 버린 것이다.

행정상 실무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폐기물인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정확한 개념 정립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